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무총장의 파견자 지휘·감독〉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80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춘생 · 김준형 · 서왕진 · 김선민 · 이해민 · 차규근
박은정 · 강경숙 · 김재원 · 황운하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1.

3. 회 부 일 : 2024. 12. 12.

※ 의안번호 : 638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직무상 필요 시 국회사무총장은 국가기관 등에 공무원·직원의 파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사무총장이 파견된 사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사무총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u>소속</u>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③ (생략)	제4조(사무총장) ① ----- ----- --- <u>공무원(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u> -----. ②·③ (현행과 같음)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¹⁾에 근거하여 법원

-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등 헌법기관, 기획재정부 · 외교부 · 법무부 등 행정각부와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고 있고,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2)에 따라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인 국회사무총장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음.³⁾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사무처법」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 · 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⁴⁾인 국회경비대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경비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 · 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 ·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 · 기간 · 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파견근무의 사유 및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및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와 「국회인사규칙」 제44조(파견근무) 및 제44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4)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는 직할대로 조직되어 있음(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국회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 국회경비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⁵⁾에 따라 설치된 경찰조직으로 파견이 아닌 행정응원⁶⁾의 형식으로 국회에 배치되고 있으며, 경찰청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으나 주요 사항은 국회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또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경비대에 의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 봉쇄된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문제 인식 및 입법취지와 유사하면서도 「국회사무처법」이 아닌 「국회법」을 개정 대상으로 선택하여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회 소속 경호조직(국회경비대, 국회경호처, 국회경찰, 경위대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되어 있음.

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6) 일각에서 국회경비대를 국회 경비를 위하여 ‘파견’된 경찰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경찰력의 국회 배치는 「국회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상 파견이 아닌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즉, 현재 국회경비대가 파견이 아닌 행정응원의 형식으로 배치되고 있는 점, 유사한 입법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의 계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여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불특정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국회사무총장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명시하기 보다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경호업무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 관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⁷⁾

문 의 처
02)6788-5017

7)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 32조의4 및 관계 법규에 따라 파견받을 기관의 장인 국회사무총장의 요청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고, 파견자는 파견받은 기관인 국회사무처의 복무 관련 규정(「국회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회사무총장이 부여·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국회사무처법」에 같은 내용의 규정을 중복하여 신설할 실익은 적어 보인다는 입장임.